

제 1324 호

1986. 11. 4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문실  
 편집인 : 영문실 김진숙  
 전 화 : 731-6111~3  
 사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발행처	1986. 11. 4	발행일	1986. 11. 4
제1부	김민기	제2부	김민기
제3부	김민기	제4부	김민기

# 시보

## 차 례

- ◎ 고 시
  - 제 790 호 :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 3
  - 제 799 호 :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 ..... 3
- ◎ 공 고
  - 제 602 호 : 관인교부공고 ..... 3
  - 제 607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 4
  - 제 620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 4
- ◎ 사 령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790 호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86.10.29

서울특별시

1. 신청절차

주유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제출서류(제 3 호)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시민 봉사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2. 허가 기준

가. 인적제한

1) 석유사업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업업자가 아닌자

3)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역제한

1) 주유소의 설치위치는 광화문원표를 기점으로한 도심반경 5 km 이상 외곽지역으로서 폭 20 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취소된 동일장소에 법령

에 정한 기간경과후 재허가시에 는 예외로 한다.

2) 주유소 상호간 거간(담 또는 의벽으로부터 상호간 재선거리)은 1 k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취소된 동일장소에 법령이 정한기간(86.5.12) 이전에 허가취소 사유 발생분은 1년)경과후 재허가 하거나 자동차 정류장(터미널)내의 설치허가(터미널 수용 차량에 한하여 이용조건)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주유소 시설물 의벽으로부터 가연성가스의 제조, 충전소 및 3톤이상 저장시설의 의벽까지 14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 경계선까지 20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할 교육구청장의 설치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건축년, 도시계획법, 소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다. 시설기준

1) 저장시설: 40 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이라야 한다.

2) 주유기: 4대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1 개소(남, 여 구분 있는 면적 10 m<sup>2</sup> 이상)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1 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라. 취급 유종 취발유, 등유, 경유에 한한다.</p> <p>3. 재출서류 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 나. 토지 등기부 등본 다. 공증된 토지주의 사용 승락서(타인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근주유소, 다른 위험물 취급시설, 및 학교와의 거리측정 도면</p> <p>4. 허가신청 처리 가. 구청장은 주유소 허가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후 처리한다. 나. 동일지역에 경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된 순위로 하위 동일자 접수분에 대하여는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측정 결과 원거리를 우선처리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고시는 1986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장소이전 허가시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종전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 334호 : 86.5.23)"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고시제 799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p> <p>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11.4 서울특별시 장</p>
---	---

구분	시설명	사용구분	금액	비고
기타시설	한강 낚시터 사용료	1 회	500 원	

<p style="text-align: center;"><b>공 고</b></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공고제 602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표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 마포부너복기관장인 및 동북지관계인,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p>	<p>년회관장인 및 동회관 개인을 관인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함을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11.1 서울특별시 장</p>
--	--

1. 사용개시일자: '86.11.1 2. 사용관인 가.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장인 나.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계인 다.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인 라.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년회관계인		◎서울특별시공고제 607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426 호('86.7.26)로 KS 표시 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 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6.10.29 서울특별시장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장인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계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인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년회관계인
		◎서울특별시공고제 620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도봉구정 인가 투목: 30500-(86.3.17) 의 2건 호트 설치인가및 도정: 30310-33780 (85.10.10)호의 6건의 토지형질 변경및 사도개설 허가에 따른 공공 하수도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용 개 시 년 월 일	배 수 구역	구 별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름한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1986.11.4		서울특별시 장
공 랑 개 요					
1	수유 1 동 477-2 주변의 3 개소	D=450%, L=227.5m	'86.7.22	출량	합류식
2	공릉동 566-1 의 3 필지	D=450%, L=232.5m D=500%, L=108m	'86.8.25	"	"
3	공릉 1 동 388-6 의 3 필지	D=600%, L=125m D=450%, L=400m	'86.8.31	"	"
4	미아동 699-45, 698-2 간 (도로개설)	D=600%, L=122.5m	'86.9.11	"	"
5	미아 5 동 637 번지 주변	D=600%, L=159m	'86.9.13	정비	"
6	방학동 663, 610, 694 주변	D=600%, L=80m D=450%, L=350m	'86.7.9	출량	"
7	도봉동 562 주변	D=450%, L=160m	'86.7.9	"	"
8	방학동 623 번지 주변	D=600%, L=84m	'86.7.11	"	"
9	(외정부사계간)	양거 (1.75m×1.5m-2면) L=47m	'86.9.10	"	"
10	상계 1 동 1203 주변	D=450%, L=82m	'86.1.19	"	"
11	중계동 308-1 의 3 필지	D=600%, L=60m	'86.6.11	"	"
12	중계동 426-8 의 5 필지	D=600%, L=27m 양거 (1m×0.7m), L=70m	'86.8.21	"	"
13	창동 465-4 의 5 필지	D=600%, L=98m	'86.5.8	"	"
14	수유동 516-87 의 1 필지	D=600%, L=50m D=450%, L=35m	'86.6.	"	"
15	상계동 602-2 의 4 필지	D=600%, L=94m	'86.10.	"	"
16	(사도개설)	D=450%, L=35m	'86.3.	"	"
	상문동 668 번지 주변				

사 령

◎ 1986년 11월 3일자

명제 453호

성 명	발 명 사 함	원 부	직 급
박용빈	환경청파견 ( '86.11.1 ~ '86.12.31 )	상 동 주	지방환경기사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 간	여 행 목 적	경 비
소 속	직 급	성 명				
종합건설 본부 급수과	지방시설 부기감 토목기정	이종철 김진배	이탈리 핀란드 (프랑스)	'86.11.1 ~ 11.14  ( 14일간 )	국제상수도 회의 참석 등	사비부담 (상수도 특별회계)

○  
서울특별시장